

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0-36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6. 8.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☐ 제안이유

- 언어 장벽으로 인해 생활고충, 취업, 근로관계, 체류지원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모국어 통역상담을 지원해온 안산시 외국인 주민상담지원센터의 위탁기간 2026.12.31.에 만료될 예정임
- 이에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시의회 동의 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한 운영기관 공개모집을 진행하고자 함.

☐ 위탁사무명

-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운영

☐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
- 추진근거
 - 「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 제20조
 -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, 제7조, 제17조
- ※ 관계법령 발췌서 : [붙임 1]
- 필 요 성
 - 안산시 외국인주민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, 외국인 상담지원 업무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고자 함.

☐ **민간위탁 기간 및 사무내용**

- 민간위탁 기간 : 2027. 1. 1. ~ 2031. 12. 31. (5년)
- 민간위탁 사무내용
 - 외국인주민 전화상담, 방문상담 및 출장상담에 관한 업무
 - 생활정보제공, 임금체불·퇴직금, 연금·보험, 사업장 변경, 재고용, 산업재해, 출입국, 의료, 민사·형사사건, 성희롱·성폭력, 가정불화, 가정폭력 등 외국인주민 고충과 관련된 상담지원 및 연계업무
 - 그 밖의 통역 상담지원 관련업무
 -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☐ **위탁시설 개요**

- 소 재 지 :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 43(원곡동, 외국인주민지원본부 1층)
- 규 모 :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내 1층(면적 122㎡)
- 운영인력 : 13명(센터장 1명, 사무직 2명, 상담원 10명)

☐ **수탁자 선정방식**

-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

☐ **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** : 【붙임 2】

☐ **예산수반사항** : 【붙임 3】

☐ **방침결정문** : 【붙임 4】

□ 부 대 의 건

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- 조례에서 위탁기간의 근거로 ‘행정재산의 관리위탁’에 대해 규정하는 상위법을 원용하고 있는데, 이는 위탁사무의 본질 및 성격, 그리고 그에 따른 상위법 원용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. 또한 조례에서 위탁기간은 상위법을 따르면서도 재계약기간은 따르지 않은 것 등 법리상의 문제점들이 파악되었음.
- 향후 위수탁 계약상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, 조례 개정을 통해 본 건 위탁의 법적 성격과 위탁기간의 근거를 명확히 할 것을 권고함.